# 근로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한다(임금을 받지 않는 자원봉사자나 사장은 근로자가 아니다). 이때, 사용자의 임금 지불과 노동력 사용은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행해져야한다. 또한 헌법에서 근로 조건 기준에 관해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 했다.

# 기본권에의 근로

헌법에 명시된 인권-기본권-에, 모든 일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이들에게 근로 기회와 생활 보장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곧, 사회권 중 일부로 근로의 권리이다.

# 근로자의 권리

근로의 권리는 조건적으로 모든 이들에게 있지만 근로자의 권리는 근로자가 행사하는 것 이다. 근로 조건의 수준이 헌법에서 법률로 정한다 했고,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어있다. 이것은 노동 3권인데, 자유권이다.

1. 단결권 : 노동 조합을 만들 권리
2. 단체 교섭권 : 사용자와 교섭(협상)할 권리
3. 단체 행동권 : 사용자와에 쟁의행위 할 권리

## 구체적인 근로 조건

1. 근로 시간 : 1일 8시간, 1주 40시간
2. 해고 : 30일 전 통보 및 정당한 이유로 해고
3. 휴식 시간 : 4시간마다 30분의 휴식 시간 제공
4. 임금 : 일정한 날짜에, 매달 1회 이상, 현금으로 전액 지급(최저임금 이상)

# 노동권(근로자의 권리) 침해

근로 조건을 어기는 것을 노동권 침해라고 한다. 부당 해고 및 부당 노동 행위(정당한 노동 조합 활동을 불이익 취급, 또는 사용자가 개입)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 구제

1. 임금 미지급 : 고용 노동부 / 법원에 도움 요청
2. 부당 해고, 부당 노동 행위 : 노동 위원회, 이후 사용자의 불복시 법원에 소 제기